

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의안번호      | 제 호                | 의결사항 |
| 의결<br>연월일 | 2023. . .<br>(제 회) |      |

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  
부가가치세및개별소비세  
특례규정일부개정령안
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출자   | 국무위원 ○○○<br>(기획재정부장관) |
| 제출연월일 | 2023. . .             |

법제처 심사 전

## 1. 의결주문

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외국인관광객의 사후면세점 이용 확대

## 3. 주요내용

외국인관광객의 사후면세점 이용시의 즉시환급(1회50만원→1회70만원) 및 도심환급(500만원→600만원) 한도를 상향하고자 함. (안 제6조제2항 및 제10조의4제1항, 동조 제3항)

## 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## 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  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 
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

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를  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제1호 중 “50만원 미만”을 “70만원 미만”으로 한다.

제10조의4제1항 및 제3항 중 “500만원 이하”를 “600만원 이하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적용례)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구입 분부터 적용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<br>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<br>정<br>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6조(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및 개별소비세액의 환급) ①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6조(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및 개별소비세액의 환급) ①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② 면세판매자는 외국인관광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면세판매장에서 외국인관광객에게 면세물품을 세액상당액을 차감한 가격으로 판매한 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거나 해당 면세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. | ② ----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. 세액상당액을 포함한 1회 거래가액이 <u>50만원 미만</u> 일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----70만원 미만----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. 입국 후 즉시환급을 받은 세액상당액을 포함한 총 거래가액이 250만원 이하일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---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③ ~ ④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③ ~ ④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10조의4(전자판매확인서를 통한 세액상당액 환급 등의 특례) ①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세판매자는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포함한 1회 거래가액이 <u>500만원 이하</u> 이고, 외국인관광객이 제9조 및 이 조 제4항에 따라 출국항 관할 세관장의 반 | 제10조의4(전자판매확인서를 통한 세액상당액 환급 등의 특례) ① -----<br>-----<br>-----<br><u>600만원 이하</u> -----<br>-----<br>----- |

출확인을 받기로 하고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세액 상당액을 환급 또는 송금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자판매확인서를 전송받은 환급 청구운영사업자는 전송받은 전자판매확인서를 출국항 관할 세관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③ 제1항에 따라 전자판매확인서를 전송받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외국인관광객이 요구하는 경우 제10조의2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면세물품(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포함한 1회 거래가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)을 구입한 때에 부담한 세액상당액을 면세판매자를 대리하여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하거나 송금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해당 외국인관광객에게 제9조 및 이 조 제4항에 따른 출국항 관할 세관장의 반출확인을 담보하기 위하여 환급 또는 송금하는 세액상당액을 한도로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

④ ~ ⑥ (생략)

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ten horizontal dashed lines, typical of primary-ruled notebook paper.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extend across the width of the page. There is no handwriting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.

② (현행과 같음)

[illegible]

④ ~ ⑥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|                  |
| 연 락 처         | (044) 215 - 4323 |